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정책과)

의안번호	제308호
제출자	정해숙의원 외 외 8명(2024. 5. 28.)
의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검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운영계획 수립 및 행정체험연수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고등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 현재 우리구 청년층(19세이상 ~ 34세 이하) 인구는 성북구 총인구의 23%인 99,589명임. 또한 관내 7개 대학생 인구는 66,864 명(2024. 4. 현재)임
- 성북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0일간(여름방학, 겨울방학)
 - 모집인원 : 100명(우선모집 15명, 일반모집 85명)
 - * 우선모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 성북구 주민등록 된 청년(39세 이하)으로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근무조건 : 주일 근무, 1일 5시간(점심시간 별도), 성북구 생활임금 적용
 - 근무내용 : 구정 관련 각종 자료 정리, 사무보조, 현장업무 보조 등
 - 소요예산 : 2023년 여름 100명 1억3,720만원, 겨울 100명 1억4,159만원
 - 향후계획 : 성북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사업대상을 관내 청년 전체로 확대하여 학력에 따른 제한 없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

으로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 대상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 지자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비(非)대학생이 배제됨에 따라 대학생 이상의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¹⁾ 및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²⁾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은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지정을 권고함.
- 안 제3조에서는 운영시기를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근무방법으로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도록 규정함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 시 비(非) 대학생 차별” 사건에 대해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음(2023. 4. 18.)

2)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 의안에 대해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 결정을 원한 가결한 바 있음. (2023. 11. 17.)

- 안 제6조에서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 안 제7조 대상자 선발에서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 임금기준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하며,
 -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 업무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검토되었음.